

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0. 10. 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『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』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.

2. 주요내용

-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대상은 토지매입이 4건에 29,061㎡ 782,210천원이고, 건물 취득이 2건에 944.37㎡ 214,007천원입니다.

가. 토지 매입은

- ① 주민문화예술 공간조성 폐교 토지매입(문화체육과)
 - ▷ (구)수하분교 : 대관령면 수하리 65-1번지외 1필지 5,068㎡ 189,875천원
 - ▷ (구)삼한분교 : 대관령면 횡계리 472-1번지 7,537㎡ 160,000천원
- ② 헴프(Hemp)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구수동분교 토지매입(관광경제과)
 - ▷ 방림면 계촌리 249-1번지외 5필지 7,781㎡ 185,789천원
- ③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 부지(관광경제과)
 - ▷ 평창읍 이곡리 337-1번지외 5필지 6,209㎡ 188,595천원
- ④ 명품소나무숲 조성사업 부지매입(산림과)
 - ▷ 용평면 용전리 206-8번지 2,466㎡ 57,951천원

나. 건물 취득은

- ① 주민문화예술 공간조성 폐교 건물매입(문화체육과)
 - ▷ (구)수하분교 : 대관령면 수하리 65-1번지내 4동 415.17㎡ 133,225천원
 - ▷ (구)삼한분교 : 대관령면 횡계리 472-1번지내 4동 229.62㎡ 68,969천원
- ② 헴프(Hemp)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구수동분교 건물매입(관광경제과)
 - ▷ 방림면 계촌리 249-1번지내 2동 299.58㎡ 11,813천원

4. 첨부자료

가.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목록 1부.

나.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재산 위치도 1부.

다. 관계법령 발췌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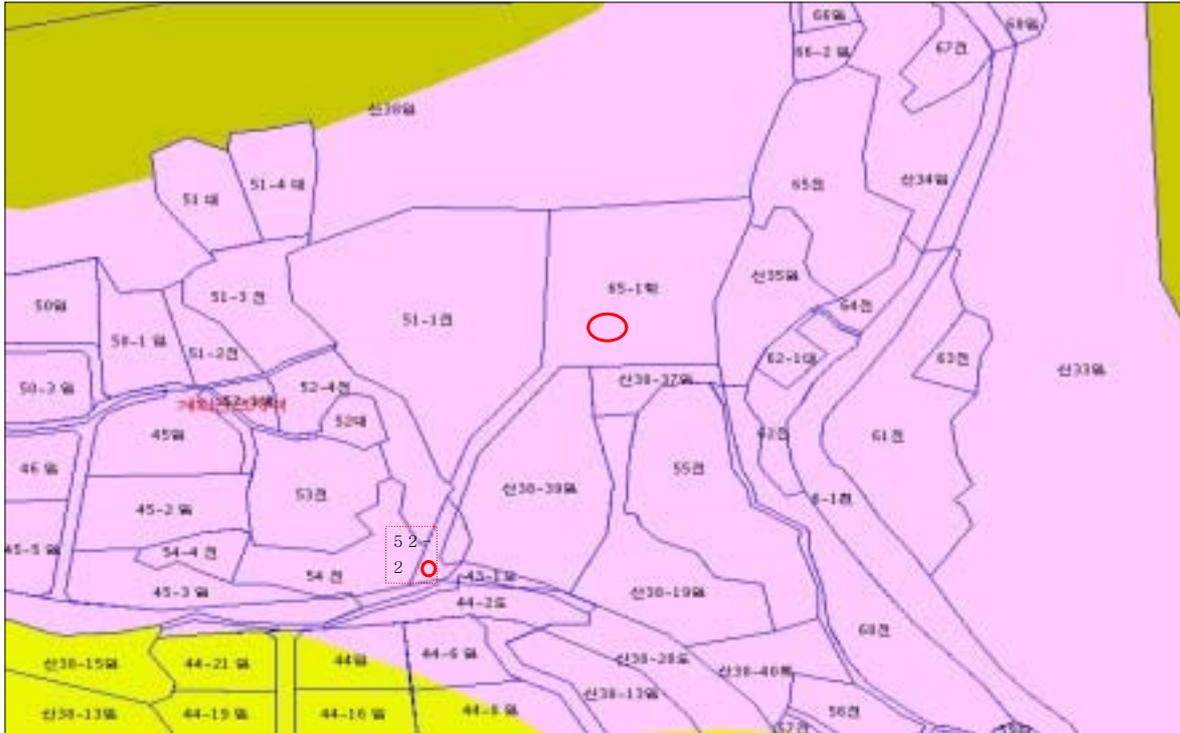
□ 주민문화예술 공간조성사업(문화체육과) - (구)수하분교

(취득내역)

(단위:m²,천원)

구분	소재지	지목	취득면적	추정가격	소유자
토지	대관령면 수하리 65-1	학교용지	4,798	145,040	강원도 (교육감)
"	대관령면 수하리 52-2	임야	270	44,835	
건물	대관령면 수하리 65-1	건물	415.17	133,225	
합계				323,100	

(지적도)



(위치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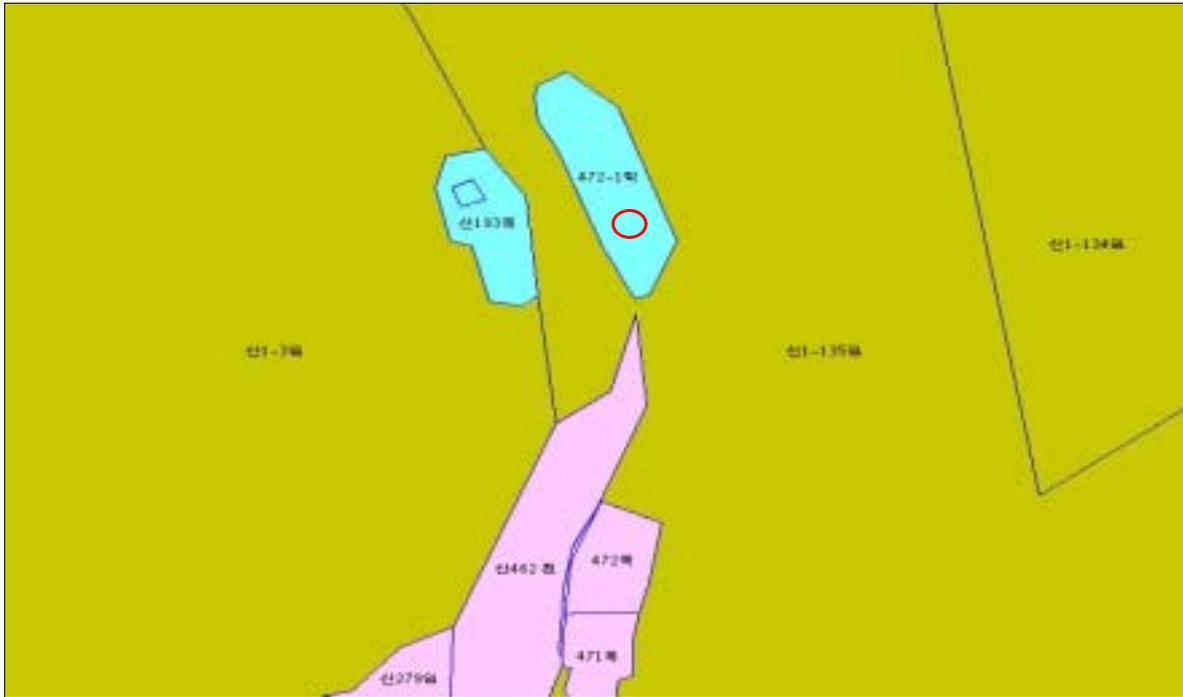
□ 주민문화예술 공간조성사업(문화체육과) - (구)삼한분교

(취득내역)

(단위:m²,천원)

구분	소재지	지목	취득면적	추정가격	소유자
토지	대관령면 횡계리 472-1	학교용지	7,537	160,000	강원도
건물	대관령면 횡계리 472-1	건물	229.62	68,969	(교육감)
합계				228,969	

(지적도)



(위치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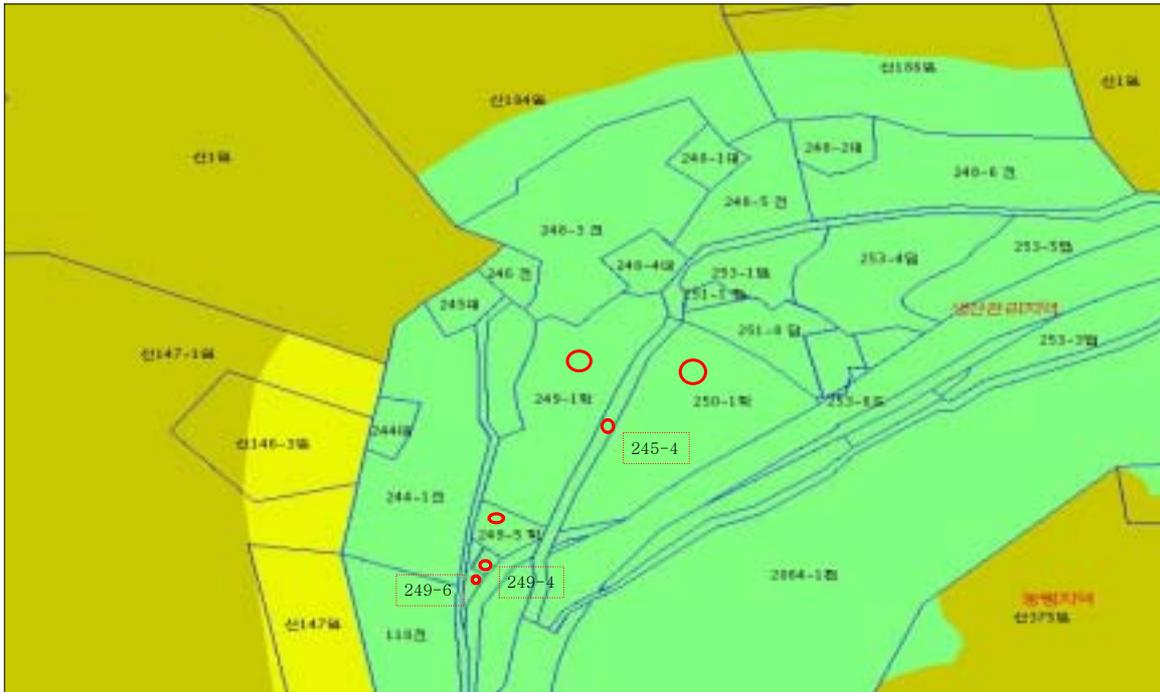
□ 헴프(Hemp)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(관광경제과)

(취득내역)

(단위:m²,천원)

구분	소재지	지목	취득면적	추정가격	소유자
토지	방림면 계촌리 245-4	학교용지	709	17,725	강원도 (교육감)
"	방림면 계촌리 249-1	학교용지	3,006	71,543	
"	방림면 계촌리 249-4	대	69	1,725	
"	방림면 계촌리 249-5	학교용지	368	8,612	
"	방림면 계촌리 249-6	학교용지	117	2,598	
"	방림면 계촌리 250-1	학교용지	3,512	83,586	
합계	6필지		7,781	185,789	

(지적도)



(위치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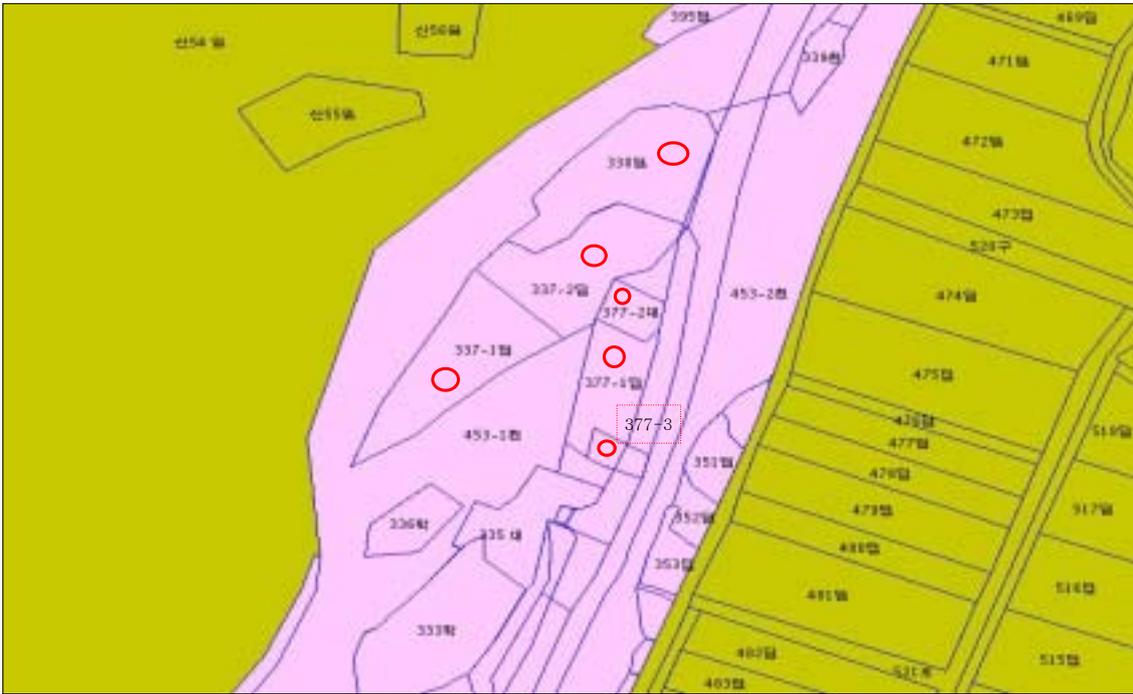
□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(관광경제과)

(취득내역)

(단위:m²,천원)

구분	소재지	지목	취득면적	추정가격	소유자
토지	평창읍 이곡리 337-1	답	1,653	44,631	이돈각
"	평창읍 이곡리 337-2	답	1,510	45,300	
"	평창읍 이곡리 377-1	답	855	27,360	
"	평창읍 이곡리 338	답	1,772	56,704	박종관
"	평창읍 이곡리 377-2	대	298	10,728	박덕수
"	평창읍 이곡리 377-3	답	121	3,872	황숙자
합계	6필지		6,209	188,595	

(지적도)



(위치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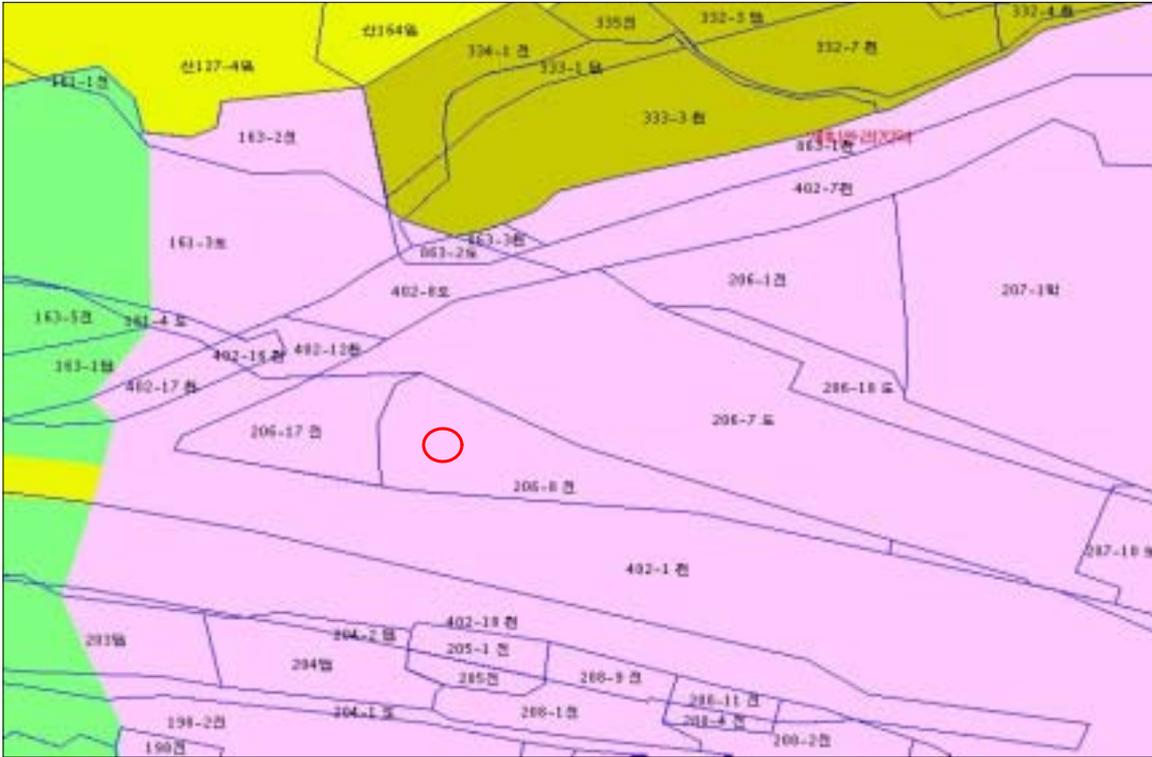
□ 명품소나무숲 조성사업(산림과)

(취득내역)

(단위:m²,천원)

구분	소재지	지목	취득면적	대장가격	소유자
토지	용평면 용전리 206-8	전	2,466	57,951	설명자와 4인

(지적도)



(위치도)



관계법령 발췌

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

제10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 [전문개정 2008.12.26]

제16조 (공유재산심의회)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.

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8.12.26]

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

제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[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

(算定)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지가"라 한다]로 하고,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.

가. 취득의 경우 : 10억원

나. 처분의 경우 : 10억원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 : 1건당 1천제곱미터

나. 처분의 경우 : 1건당 2천제곱미터